

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

1 추진 배경

- (학교 안) 방과후 수업, 성평등 교육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는 지적 지속 제기
 - ※ “조선인은 일본군 되면 출세” ...리박스쿨, 체험학습 강사 교육에도 ‘침투’(25.6. 한국일보)
- (학교 밖)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난 교육을 실시하는 등록 대안교육기관,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 사례 확인·개선 요구
 - ※ 대안교육기관에서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 및 군사훈련 실시(25.9. 한국일보)

⇒ 초·중등 학생 모두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의 중립성 강화와 함께 편향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대응·관리 필요

2 주요 현황

□ 학교 안 교육

- (교육과정 내 강사)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해 교과·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강사를 채용·활용
 - 특히 진로체험, 동아리활동이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(총 수업 시간의 10% 내외*)의 강사 활용 비율이 높음
 - * (초 1~2) 13.6%, (초 3~4) 10.3%, (초 5~6) 9.4%, (중) 9.1%, (고) 9.4%
- (늘봄·방과후 강사) 학생들의 종합적인 성장·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활용해 정규수업 외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 중
 -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도입 후 희망하는 학생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확대

□ 학교 밖 교육

- (등록 대안교육기관) 총 267개 기관('25.9.1. 기준)이 등록·운영 중
 - 교육청은 법령상 기본운영 요건 준수여부 및 보조금 집행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점검해 왔으나, 일부 교육청은 점검 미실시
 - ※ ○○학교(기관명칭 사용 부적정), △△스쿨(불법 유아교육 시설 운영) → 시정명령('25.9.~10.)
- (미인가·미등록 시설)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은 형태와 운영 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
 - ※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누적 81개소('22.1.~'25.10.), 교육청에서 파악 중인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은 총 25개소('25.9.1. 기준)
 - 민원·신고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적발된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은 형사고발·등록유도 등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*
 - *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폐쇄명령·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나, 대부분 학원·대안교육 담당부서에서 시설 등록 유도

3 교육의 중립성 강화 방안(안)

□ [학교 안]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검증·관리

[교육과정 내 강사 검증·관리]

- (문제점)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서 「헌법」, 「교육기본법」 등에 따른 교육의 중립 의무가 당연 적용되나 강사의 활동에 대한 관리·감독은 미흡
- ☞ (대안) 강사 활용 시 사전·사후점검 강화 및 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기

- (법적 의무 고지) 강사 채용 단계부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중립성 준수 필요성 고지, 중립성 위반 시 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 '표준계약서' 마련·안내
- (사전점검) 담당 교원이 강사가 진행할 수업 내용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강사와 협의하여 내용 조정
- (사후조치) 입장지도를 통해 수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의 배제·계약 해지 등 즉시 조치

[늘봄·방과후학교 검증·관리 강화]

- (문제점) 늘봄·방과후학교도 교육의 중립성 준수 원칙이 적용되나, 법령·지침 등에 구체적 관리·감독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학교 차원에서 문제 상황에 대응
※ 현재, 방과후학교는 근거법 없이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함께 수립하는 지침에 따라 운영 중
☞ (대안) 늘봄방과후학교 근거법을 마련하고, 강사 활용 단계별 검증·관리 방식 구체화

- (법적 의무 명확화) 늘봄·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해당 법에 명시하고, 업체·강사와의 계약에도 반영*
* 업체·강사 계약 시 중립성 준수 서약서 징구, 중립성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
- (채용 시 검증 철저)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강사 등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* 신설, 강사 검증 시 국가(공인)자격 중심으로 검증
* 금고 이상 실형, 미성년성범죄, 성폭력, 금품수수성적조작·학생폭력 등 범죄전력 및 마약중독
- (모니터링 강화) 프로그램·강사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공개, 만족도 조사를 확대(연 1회 → 학기 1회)하고 늘봄학교 신고센터 운영
- (상황 대응 및 환류) 교육의 중립성 위반 확인 시 늘봄·방과후지원 센터가 사안조사·법률자문 지원, 차년도 강사 선정에 만족도 결과 반영

□ [학교 밖] 대안교육기관 등 관리 강화

[등록 대안교육기관 관리·감독 강화]

- (문제점) 그간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의 중립성 준수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관리·감독 기제 부족
☞ (대안)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 및 미등록 시설 제재 근거 마련

- (등록·지원기준 명시)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공공성 및 중립성 준수 여부를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(고시·조례 등)에 명시적으로 포함
-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미충족 시 교육감이 기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
※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「대안교육기관법」 개정 추진

- (점검 강화) 등록 시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따라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는지 교육청이 정기점검하도록 법에 의무화 추진
 - 교육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교육감 산하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부규정* 마련 필요
 - *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운영위는 기관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심의 가능
- (모니터링 강화) 재정지원·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기관별 운영위원회 학부모 비율 상향(기존10~50%→예시30% 이상), 지역위원 포함(신설) 검토
- (패널티 강화) 사회 통념에 위배되는 교육 등 부적절 운영 시 예산 지원 배제, 등록취소 등 조치 강화, 폐쇄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

※ (참고) 현행 「대안교육기관법」 상 부적정 운영기관 제재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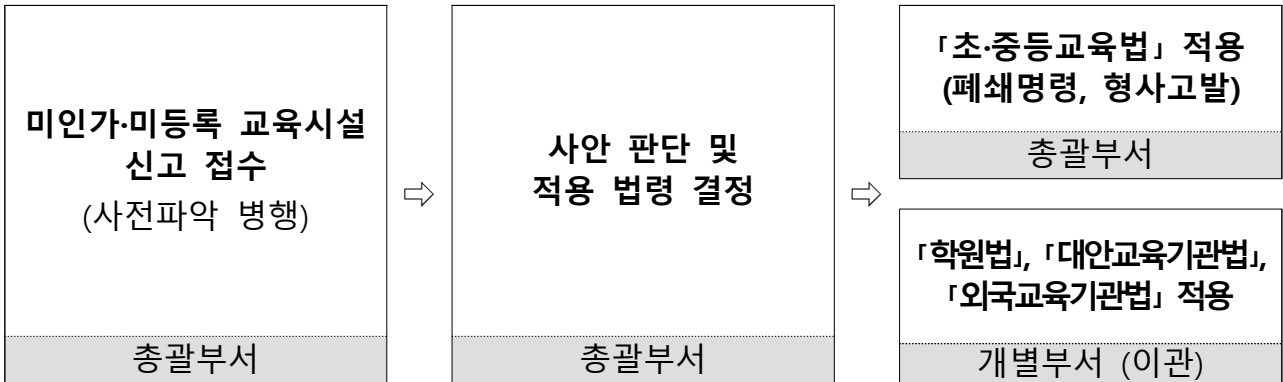
- 등록 시 제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,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기관을 운영한 경우 등록취소 가능 (법 제7조)
- 기관이 관계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시정명령 가능 (제20조)
- 시정명령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(제24조)

[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 등 관리체계 구축]

- (문제점) 교육청 내 전담부서 없이 민원·신고를 접수하는 부서에서 「학원법」, 「대안교육기관법」 등에 따라 조치하여 체계적 대응 부족
- ☞ (대안) 미인가·미등록 시설 전담부서를 통한 조사 및 사후조치 철저

- (관리체계 정비) 교육청별로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의 신고 접수, 현황조사, 조치 방향 결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 지정
 - 개별부서에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점검*, 민원,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시설 정보를 총괄부서와 공유하여 선제적 관리 강화
 - * 학교별 담당교사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소재·안전과 결석사유 확인을 위해 전화상담, 화상·대면 관찰 등 점검 실시
 - ‘학교’와 동일·유사한 기관은 총괄부서가, 그 외의 기관은 특성에 따라 개별부서가 관리·조치하여 사각지대 최소화

< 교육청 내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 처리 절차 개선(안) >



- (처분·조치 지원)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원법」 등에 따른 폐쇄명령·고발 등의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*해 교육청에 제공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처벌 대상인 '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'의 의미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원법」, 「외국교육기관법」 등이 경합할 경우 판단기준 등
 - ※ 학원의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청이 '폐쇄조치' 가능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추진*
 - *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 추진(24.11. 개정안 발의)
- 등록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유사한 '명칭'을 사용하는 시설을 제재할 수 있도록 「대안교육기관법」에 근거 마련 추진
- (실태점검) 교육부-교육청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, 현장점검 등 미인가·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
 -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기관은 운영 현황·형태·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교육부의 법령해석 지원을 받아 교육청이 조치
- (취학의무 독려) 아동의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 및 실질적 부과 조치 이행*, 아동학대 혐의 발견 시 고발 등을 통해 취학의무 준수 독려
 - *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과태료 조항 개정 추진

4

추진 계획

- 등록 대안교육기관 실태점검 실시(11.3~)
- 학교 내 강사의 교육활동 중립성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(~11월)
- 「대안교육기관법」 및 등록제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(~11월)
- 교육청 내 미인가·미등록 시설 총괄부서 지정 및 점검계획 마련(~11월 4주)
- 교육부-교육청 합동 실태점검 실시(12월~)
 - ※ 합동 실태점검 기간 中 교육부-교육청 집중 신고기간 운영 병행(신고게시판 운영 등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등에 따른 폐쇄명령·고발 판단 기준 마련('25.11~)